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1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 박범계·송갑석·정정순

노웅래 · 장경태 · 도종환

강훈식 • 조오섭 • 전재수

장철민 · 고용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2018년 12월 제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되어,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세계 대중에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강화하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기여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최근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적·종교적·문화적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통해 반목·대립·갈등에서 화해·협력·평화의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의 대화와 논의의 기제를 만드는 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설명 센터'의 국제적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협력・평화의 정신을 강화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 2 신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산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 4. 효과적 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 · 보급

-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u><신 설></u>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
	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
	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
	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
	명 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
	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
	<u>립한다.</u>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
	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
	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u>행한다.</u>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
	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
	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

 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 4. 효과적 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보 급
-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 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8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